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1. 7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8. 11.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정년규정의 개정(98. 9. 19)에 따른 관련규정과 휴직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고용직공무원 휴직에 관한 규정 정비

- 고용직공무원 임용권자 조정

- 현행 :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 개정 : 시장 또는 구청장

-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감축

- 현행 : 58세 → 57세로 감축

- 고용직공무원 징계규정 정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직공무원 임용권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한 이유와 입법취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직공무원을 일반직 수준으로 정하고 징계 사항도 일반직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2 호
의결년월일	98. 11. 14 (제66회)

제출년월일 : 1998. 11.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정년규정의 개정(98. 9. 19)에 따른 관련규정과 휴직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고용직공무원 휴직에 관한 규정정비
- 고용직공무원 임용권자 조정
 - 현행 :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 개정 : 시장 또는 구청장
- 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감축
 - 현행 : 58세 → 57세로 감축
- 고용직공무원 정계규정 정비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시장 또는 소속 구청장이 행한다. 단, 신규임용은 시장이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휴직) ①고용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펼하기 위하여 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징계 등)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 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중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중 제5조제1항, 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임용권자) 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생략)</p> <p>제8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신설></p>	<p>제2조(임용권자) 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시장 또는 소속 구청장이 행한다. 단, 신규임용은 시장이 한다. ②(현행과 같음)</p> <p>제8조(휴직) ① 고용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펼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u>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u></p> <p><u>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p>																		
제10조(징계 등)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파면 또는 감봉한다.	<p><u>제10조(징계 등)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u></p> <p><u>② 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u></p>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 상한 연령표	<p>[별표]</p> <p>.....</p> <p>.....</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 종</th> <th>경 노 무</th> </tr> </thead> <tbody> <tr> <td>직 명</td> <td>지도원</td> <td>사 환</td> </tr> <tr> <td>근무상한 연령</td> <td>58 세</td> <td>58 세</td> </tr> </tbody> </table> <p>비교 : (생략)</p>	구 분	1 종	경 노 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 연령	58 세	58 세	<table border="1"> <tbody>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57 세</td> <td>57 세</td> </tr> </tbody> </table> <p>비교 : (현행과 같음)</p>	57 세	57 세
구 분	1 종	경 노 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 연령	58 세	58 세																	
.....																	
.....																	
.....	57 세	57 세																	